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16일

나. 발 의 자 : 최경동, 권재욱, 박교상, 안장환, 양진오, 장세구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6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최 경 동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항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,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4조의2)
 -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시설물의 안전점검
 - 적용범위 :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이상인 공동주택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종 우

○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